

●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4-0282호

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'행정절차법'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07월 11일

문화체육관광부장관

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

1. 제정이유

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이 제정(2023.9.14. 법률 제19705호 / 시행 2024.9.15.)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전통문화의 범위(안 제2조)

- 1) 법령에 규정된 전통예술 및 전통생활양식 외 이에 관련된 소재·기법·문양 및 사상·관습 등 포함하여 규정함

나. 전통문화산업 실태조사에 대상 및 운영에 관한 규정(안 제3조)

- 1) 전통문화산업의 실태조사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- 2) 전통문화산업 실태조사 실시 주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- 3) 전통문화산업 실태조사 실시 기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

다.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4조)

- 1) 전통문화산업 양성기관 지정 및 신청요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
- 2) 전통문화산업 양성기관 지원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
라. 전통문화산업 기술개발 지원 대상 등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5조)

- 1) 전통문화산업 기술개발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- 2) 전통문화산업 기술개발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
마. 전통문화상품 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6조~제7조)

- 1) 전통문화상품 품질표시 대상품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- 2) 품질관리 기준, 품질표시 및 품질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
바. 전담기관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8조)

- 1) 전담기관 지정 요건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- 2) 전담기관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
3) 전담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

사. 지역문화 전통문화상품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9조)

- 1) 전통문화산업 전시회 또는 박람회, 지역축제 및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판매 등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
아.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0조)

- 1) 전담기관 위탁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
3. 의견제출

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,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전통문화과
- 전자우편 : yki92@korea.kr
- 팩스 : (044) 203 - 3469

4. 그 밖의 사항

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과(전화 (044) 203 - 2552, 팩스 (044) 203 - 346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